國會本會議會議錄 第212回國會 第 5 號

國會事務處

2000年6月29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 1.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
- 2.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

附議된案件

1.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
2.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	2
0	휴회의건(의장제의)	4
\circ	5분자유발언	5

(14시05분 개의)

○議長 李萬燮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 ○議事局長 朱永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議長 李萬燮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마 찬가지로 6월28일자 鄭昌和 의원 외 132인으로부 터 4·13부정선거및편파수사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이 국정조사 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조속히 협의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 성된 2000년도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대강을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4건 있습니다. 효율적 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 에 5분자유발언을 드리도록 각 교섭단체 대표들간 에 합의하였음을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 랍니다.

1.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통일 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4시11분)

○議長 李萬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이산 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朴寬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統一外交通商委員長代理 朴寬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朴寬用 의원입니다.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본의원이 지난 6월23일 통일외교통 상위원회에서 구두로 동의한 결의안으로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 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된 결 의안입니다.

남북회담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이 어가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에 걸쳐 혈육에 대한 생사마저 모른 채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1차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발된 100명의 고향방문단 교환을 가지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는 일천만 이산가족의 그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부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향방문단만으로는 이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고향방문단 교환과 동시에 이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서신을 교환하고, 상호방문하고 그리고 재결합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입니다.

따라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면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남북당국이 차질없이 이행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남북적십자회 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함께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아울러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91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가 채택한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 을촉구하는결의안의 내용을 상기하며 이산가족 고통해결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8·15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함께 이산가족의 조속한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 치 그리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게 이산 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 북 쌍방이 의회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결의·채택한 바 있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 위한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李萬燮 朴寬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을 서로 만나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벌써 오래 전부터 걱정해 오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64년10월 제6대 국회에서 이 사람은 많은 여야의원들의 찬동을 얻어남북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관한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냉전논리로 경직되어 있던 당국이 끝까지 방해해 외무위원회에계류된 채 본회의에서는 채택되지 못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교류의 효시가 되었고 그 후 우리 국회가 계속 이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날 그 결의안이 빛을 보지 못한 지 36년만인 오늘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결의 안이 통과되게 되니 저로서는 깊은 감회에 아니젖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국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이 다시 만나 이산가족의 한이 풀릴 수 있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朴寬用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통일외교통 상위원회에서 제안한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 위한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

(14시19분)

○議長 李萬燮 다음은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

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임명동의의건은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해 국무총리에 李漢東을 임명하기 위하여 지난 6월1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동의를 요청 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동의 요청한 李漢東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 계법규에 의하여 오늘 배부된 국회공보에 게재하 였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金德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보 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 원장 金德圭 국무총리 (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인 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金德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 의의건에 대해서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00년6월16일 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동일자로 한나라당의 安商守 의원, 沈在哲 의원, 嚴虎聲 의 원, 元喜龍 의원, 李秉錫 의원, 李性憲 의원 등 6인 과 새천년민주당의 薛 勳 의원, 朴宗雨 의원, 宋 勳錫 의원, 李洛淵 의원, 咸承熙 의원 그리고 본의 원 등 6인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의 金學元 의원 등 모두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은 2000년6월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16일 우리 특별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6월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여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후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 였습니다.

동 인사청문회의 실시계획서에 따라 우리 특별 위원회는 6월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인사청문 회를 개최하였던 바 첫날인 6월26일에는 李漢東 국무총리후보자를 출석시켜 모두발언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였고 이튿날인 6월27일에도 계속해 서 李漢東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행 한 후 정종길 등 세 명의 증인과 박원복 등 두 명 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신문과 질의를 행하고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를 다시 출석시켜서 증인 등 신문 사항에 대한 확인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6월2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 실시 경과에 대해 여 야 합의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위원회를 개최 하여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경 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 게 된 것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 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번 인사청문 회가 여야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청문 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 을 감안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진지하게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 의정사상 처음이 자 제16대 국회가 개원하여 처음 실시되는 청문회 인 만큼 인사청문회에 관한 모범이 되고 향후 제 16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심 의하는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 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서 특별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공직후보자는 모두발언 을 통해서 지난 20여년간의 정치생활을 회고하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향후 국정에 임하는 철학과 의 지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들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관련사항 그리고 재산 관련사항, 경력 등 관련사항 및 총리 로서의 도덕성 내지 국정수행능력 등에 대해서 중 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공직후보자의 개인적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후보자의 병역사항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둘째 재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지역내 부동 산 구입에 관련된 사항, 주택내 차고지 관련사항,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사항, 납세 관련사항, 접경 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셋째, 경력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잦은 발언변경, 당적변경 관련사항, 내무부장관 재임시 노사분규 개입 관련사항, 검사 재직시 수사 관련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 었고, 넷째 총리로서의 도덕성 내지 국정수행능력

등의 검증에 대해서는 통일·외교·안보·정치·경제· 사회 등 국정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 회담 후의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통일 대책, 주한미군 주둔 관련사항, 부정부패 척결대책, 기업 구조조정 관련정책, 금융경색의 원인과 대책,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의 성과,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 교육재정 확보방안 및 과외대책 그리고 여성의 지 위향상 대책, 인권신장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정종길에게는 풍산금속 노조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내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후보 자의 법 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 증인 김경태, 윤찬모에게는 포천 일대 부동산 구입 경위와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박원복에게는 공직후보자의 검사재직시수사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성손준에게는 공직후보자의 염곡동집 주차장에 대한 차고 자진정비 요청 계고장 발부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李漢 東)임명동의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행한 인사 청문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어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심사경과보고서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 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李萬燮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 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

嚴虎聲 의원, 都鍾伊 의원, 閔鳳基 의원, 朴赫圭 의원, 沈奎燮 의원, 鄭長善 의원, 全甲吉 의원, 李 鍾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난 후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 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다.

○議事局長 朱永鎮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 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 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4시31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萬燮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 작하겠습니다.

(14시4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2매입니다. 한 분 빠지고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139표, 부 130표, 기권 2 표, 무효 1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3분)

○議長 李萬燮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議長 李萬燮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 기 바랍니다.

○**安商守議員** 한나라당 과천·의왕출신 安商守 의 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정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단체 또 야당, 언론, 국민들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李漢東 총리지명자의 동의안이 가결 된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 의 권위가 섭니다.

저는 이번 야당간사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말 제도개선을 해야 될 몇 가지 점이 있다는 것 을 느꼈습니다. 국민들도 이 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청문회는 3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해서 국민과 국 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참으로 민주적인 제도입 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는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준 비기간이 지금 주어진 것이 불과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에 해보니까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나흘 걸 렸습니다. 실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닷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에 관 한 자료요청목록을 만든다 하더라도 며칠 걸립니 다. 그 목록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고 정부에서 답 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답변서를 만들 시간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 기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답변을 만들 기간도 불충분했고 또 우리가 자료요청서를 만들 시간도 부족했습니

다. 또 서면질의,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 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일, 준비기간이 20일 이상은 있 어야 되지 않느냐, 또 청문회기간도 이틀간인데 심 도있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한 15분하 면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는 추궁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요 구합니다. 국민들은 왜 계속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조금 질의하면 끊겨버리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틀만에 다 해냅니까? 증 인신문까지, 참고인신문까지 다 하라는 것은 무리 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삼사일 이상은 돼야 증인신문까 지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깊이 심도있는 논의가 있 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이 너무 미흡합 니다.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자료요구, 자료요구를 했는데 65%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35%는 거부 내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 게 해서 무슨 청문회가 됩니까? 적어도 자료제출 을 거부할 때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없어서는 청문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35%가 오지 않 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 런 전문가 또 국세청의 경우에는 전혀 그냥 답변 이 … 아예 자료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재산형성과정 또 본인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막혀 버 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러한 법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런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인사청문회를 할 바에는 정말 인사청문회다 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국 회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의합니다. 바로 인사청문 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번에 느꼈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충하는 그런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의 걱정도 덜고 또 국회의 권위도 확 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3권분립, 권력 분립의 정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萬燮 다음은 尹斗煥 의원 나오셔서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斗煥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 원 여러분!

울산 북구출신 한나라당 尹斗煥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50여년간 갖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구조의 틀을 갖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형성의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다소 왜 곡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한 결과 IMF 관리체제라 는 우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한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극복해 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빌미로 국내 산업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우자동차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입 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대우자동차 처리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의 10%, 총수출의 8%, 취업인구의 7%로서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해외매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24%입니다. 그런데 외국업체가 인수하게 되면 국내시장점유율이 최소 10% 이상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내 경쟁업체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곧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동차산업 자체가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매각은 대우자동차를 생산기지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인수업체의 주목적은 국내 시장 확보와 향후 확대될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확보 를 위한 생산거점 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내에서의 독자적인 모델의 개발보다는 해외에서 업체가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차종을 국 내에 그대로 도입해서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동차 기술개발과 마케팅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 용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개발과 마케팅은 본사에서 하고 생산은 한국에 전담시키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업체들은 생산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글로벌아웃소싱을 통해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부품생산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자동차산업은 수입유발 산업화로 내몰릴 것입니다. 해외매각에 따른 또 다른역기능은 고용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수준을 조절하는 폭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매각이 이루어지면 고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대우자동차의 해외단독 매각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국은 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었으나 7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여 자동차 업체들을 해외에 매각함으로써 현재는 영국 국적의 자동차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세계 4위인 우리나라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 8위의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90년 GM이 샤브 지분 50%를 인수한 이후 생산량은 같은데 고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든 외국 업체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탈리아의 피아트는 정부가 36%의 지분을 갖고 육성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르노가부실화되자 공기업화했고, 독일은 폭스바겐이 부실화되자 니더작센주가 인수하여 대주주가 된 공기업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크라이슬러의 경우 79년 도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 채권은행, 지방정부, 협력업체의 지분참여, 노동자들의 양보로 회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매각을 하지 않고 공기업화를 통해 회생을 시도한 모든 사례들은 성공하였으며 국가 의 기간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외환보유고가 이미 78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IMF체제에 놓여있던 당시의 외 자유치 정책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정부가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경제 와 국익을 우선에 놓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은 대국적 견지에서 해외 매각의 현재 추진방향에 대해 재고를 간절히 바랍 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큰 관심이 요구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가 경제주권을 지키고 전체 취업인구의 7%인 167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화를 비롯한 올바른 해결대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 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萬燮 앞으로는 5분발언 시간을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永吉議員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尹斗煥 의원님께서 대우자동차 해외매 각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우자동차가 저희 지역구에 위치해 있고 또 그래서 지난 선거 때부터, 작년 8월26일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부터 죽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참여해 왔습니다.

올해 총선 때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관련해서 국부유출이나 해외매각을 통해서 모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단순 하청생산기지화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논리 속에서 진정으로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자동차는 현재 18조의 부채와 12조의 자산이 있는데 이미 6조원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독자생존의 문제는 단순한 자본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적인 외국자본의 기술과 선진적인 경영기법의 도입의 문제가 같이 놓

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우자동차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해외매각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하면 우리 대우자동차의 그간의 30년의 성과, 생산판매, 해외기술, 조직 모든 것을 유지한 채 고용안정의 효과를 유지시킬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尹斗煥 의원님께서 우리가 해외매각이 되면 대우자동차는 단순 하청기지화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GM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당히 고용효과문제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러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우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본의 이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우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공급은 7,000만대의 캐퍼시티(Capac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5,000만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동차 산업이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지금 대우의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현대가 대우를 인수한다고 그래서 절대저는 발전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대는 대우와 동일한 소형, 중형차로 업종이중복될 뿐만 아니라 현대는 본인의 내실화가 더소중한 문제입니다. 대우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폴란드의 FSO공장이나 대우의 창원, 군산같은 좋은 공장시설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나머지를 해체시키는, 대우의 희생을 바탕으로 현대가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은 현대도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기술을 선진화시켜 나가고 우리 대우도 전 략적 제휴를 통해서 선진기술 경영기법을 도입해 서 독자적인 생존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자동차의 경쟁을 보장하고 생산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매각이 마치 국부를 유출시키고 나라를 팔 아먹는 매국노라는 사고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400만대, 200만대 생산규모를 늘 린다고 그래서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라고 봅니다.

아주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선진기술을 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모색을 해간다고 한 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생 각을 합니다.

대우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대우의 외자도입을 하는 것이 절대 국부유출이나 해외매각을 통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문제에 대해서 해외매각이냐 아니냐는 마치 매국이냐 애국이냐 하는 식의 추상적인 논쟁을 통해서 괜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실질적인 대화의 모색을 저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근로자들이나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포드에서 7조원을 제시했습니다.

완전고용에 대한 개런티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중의 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조합원들이 분명한 캐 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서 대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해외매각이냐 아니냐 추상적인 논쟁, 근 로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의 애매한 태도 때 문에 이러한 처리가 더 늦어진다고 한다면 그 피 해는 더욱 커져서 제2의 기아사태가 생길 수도 있 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련 상위에서 이 대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

감사합니다.

○議長 李萬燮 宋永吉 의원 잘 했는데 의장한데 절을 하고 가야 잘 했다는 얘기를 듣지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참 조)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0.6.28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안이유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이어지고 통일을 향한 진정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 는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 통부터 해결하여야 함. 특히 반세기에 걸쳐 혈육에 대한 생사마저 알 수 없는 이들의 피맺힌 가슴부 터 풀어 주어야 함.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부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향방문단의 교환만으로 이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없다고 봄.

진정으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이 신뢰의 바탕을 만들려면 이번 고향방문단의 교환과 동시에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및 재결합의 순서로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면서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 선언의 내용을 남북당국이 차질없이 이행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남북적십자회 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논의와 함께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아울러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91년과 '98년 두차 례에 걸쳐 국회가 채택한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 인을촉구하는결의안」의 내용을 상기하며 이산가족 고통해결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논의되 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 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

결을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 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 8·15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함께 이산가족의 조속한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게 이산가 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쌍방이 의회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 의할 것을 제의한다.

2000年度 國會運營 基本日程

2000.6.29

1. 基本方向

年中 常時運營의 國會像 定立

- ○國政懸案에 대한 適時性있는 審議를 통해 議 會政治 활성화 도모
- ○國會法에 의한 주기적인 臨時會・定期會 運營
- ○閉會中 常任委員會 活動

豫測可能한 國會運營

- ○國會議員의 計劃性 있는 議政活動 보장
- ○行政府 기타 有關機關의 충분한 사전 준비

臨時會 및 定期會 運營의 效率化

- ○臨時會外 定期會 審議案件 配分의 適正化
- ○效率的이고 深度있는 案件審議 보장

2. 主要內容

作成基準 및 考慮事項

- ○作成時期:總選 實施年度에는 6月30日까지 작성
- ○對象時期:7月이후 國會運營日程
- ○考慮事項:政府立法計劃, 追更豫算案 제출 여부 國會任命同意對象 존재여부 등 감안

7月 臨時國會

- ○國政報告, 交涉團體代表演說, 對政府質問 등 실시
- ○2000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大法官(6인) 任命同意(人事聽聞會 실시) ※大法官(6인) 任期滿了:7.10

定期國會

- ○會期:9.1~12.9(100日間)
- ○主要豫想活動:國政監査(20日間), 交涉團體代 表演說,對政府質問

豫算案・決算 審議, 法律案 등 案件審議 憲法裁判所長 任命同意 및 憲法裁

判官(2人) 選出

- ※定期國會 開會日 變更:9.10→9.1
- ※憲法裁判所長 및 裁判官(2인) 任期滿了: 9.14
- 3. 2000年度 國會運營基本日程

2000년7월이후

월별	집회 시기	회기	주 요 활 동	비고
7월 (임시 국회)	7.5~	3주 내외	○국정에관한보고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2000년도제1회추 가경정예산안 ○법률안 등 안건심 의 ○대법관(6인) 임명 동의	※ 임기만료일 :7.10
8월				※위원회 활동-의안심사-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준비-주요 현안사항
9~ 12월 (정기 국회)	9.1~ 12.9	100일	○국정감사(20일간) ○예산안시정연설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및 결산 심 의 ○법률안 등 안건 심 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및 헌법재판 관(2인) 선출 ○기타 현안사항	

○出席議員(272人)

姜三載 姜 成 求 姜 淑 子 姜申星一 姜雲太 姜仁燮姜在涉 姜昌成 高 珍 富 姜昌熙 姜 賢 旭 高興吉 郭治榮 權琪述 權五乙 權哲賢 權泰望 金景梓 金 敬 天 金光元 金槿泰 金杞培 金杞載 金淇春 金德圭 金德龍 金德培 金東旭

金 樂 冀 金 明 燮 金武星 金滿堤 金文洙 金民錫 金芳林 金富 謙 金 聖 順 金成鎬 金晟祚 金榮龜 金令培 金 榮 馹 金榮春 金泳鎭 金榮煥 金玉 斗 金容甲 金容鈞 金龍學 金龍煥 金雲龍 金元基 金元雄 金允式 金一潤 金元吉 金貞淑 金 鍾 金鍾河 泌 金宗鎬 金鎭載 金燦于 金忠兆 金台植 金泰鎬 金泰 弘 金宅起 金鶴松 金 學 元 한 金炯旿 金 浩 金 길 _ 金 洪 信 金孝錫 金弘一 金希宣 羅午淵 南 景弼 南宮 哲 都 鍾 伊 三 男 柳興 柳 柳 在乾 柳在珪 洙 孟亨奎 文 錫 鎬 睦 堯 文 喜 相 相 閔 鳳 基 朴光泰 朴寬用 朴槿惠 朴明煥 朴 炳 錫 朴炳潤 朴尚奎 朴相千 朴相 煕 朴世煥 朴 承 國 朴是均 朴 源 弘 朴容琥 朴仁相 朴在旭 鍾 根 朴宗雨 朴 鍾 雄 朴 朴 鍾 熙 朴柱宣 朴柱千 朴昌達 朴憲基 朴熺太 裵 基 善 朴 赫 圭 徐 英 裵 奇 雲 白承弘 徐相燮 勳 偰 松 雄 徐廷和 徐 涛 源 薛 勳 孫泰仁 孫鶴 圭 孫希娅 宋 光 浩 宋錫贊 宋 榮 珍 宋 勳 宋 永 吉 錫 辛卿植 申 溪 辛基南 輪 申 榮 國 申榮均 申 鉉 泰 沈奎燮 沈揆喆 沈載權 沈在哲 安炅律 安大崙 安東善 安 商 安泳根 安 澤 守 秀 嚴虎聲 吳 世 勳 吳 長 燮 元裕哲 元喆 元喜 龍 兪 成 根 劉容泰 喜 尹 斗 煥 尹榮卓 尹 景 湜 尹 汝 雋 尹 鐵 相 尹 漢 道 李康斗 李康來 李 揆 根 澤 李 鎭 李洛淵 李 萬 燮 李 美 卿 方 鎬 李 秉 錫 李 李富榮 李 相 得 李 相 培 李 相 洙 李 祥 羲 李 性 憲 李 良 煕 李嬿淑 李完九 李 龍 三 李 源 性 李 源 炯 李元昌 李允盛 李 允 洙 李仁基 李仁濟 李在善 李 在 五 李 在 禎 李在昌 李正一 李昌馥 李 鍾 杰 李柱榮 李 漢 久 李漢東 李海鳳 李 海 瓚 李 李 浩 雄 李會昌 李 訓 平 協 李熙圭 林仁培 任 鍾 哲 林鎭出

林采正 任 太 熙 張誠珉 張誠源 張永達 張英信 張 在植 張正彦 張泰玩 全甲吉 瑢 源 田溶鶴 田 全在姬 鄭均桓 大 哲 鄭東泳 鄭 鄭 東采 文 和 鄭 範 九 鄭 柄 國 鄭 世均 鄭宇澤 鄭 義 和 鄭寅鳳 丁 長善 在 文 鎮碩 昌 和 鄭 鄭 鄭 鄭 哲 亨 誠 鄭 基 鄭 根 趙 富 英 趙 俊 趙舜衡 曺 雄 奎 趙 在煥 曺 正 茂 趙漢天 朱鎭旴 千 容 宅 曺 喜 旭 千 正 培 崔燉雄 崔 炳 國 崔秉烈 崔鉛熙 崔龍圭 崔善榮 崔 榮 熙 崔在昇 秋 美 愛 河 舜鳳 韓 明淑 韓昇洙 韓和甲 咸 錫宰 咸 承 熙 玄 勝 許 雲 那 許 泰 烈 玄 敬大 洪 思 德 洪在馨 黄 勝 敏 黄 祐 呂

○請暇議員(1人)

鄭夢準

【報告事項】

○特別委員選任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나라당

 金光元
 李在五
 鄭亨根

 黄祐呂
 金容鈞
 尹景湜

 새천년민주당

李 協 千 正 培 秋 美 愛 李 源 性 田 溶 鶴 宋 永 吉 어느交渉團體에도속하지아니하는議員 金 學 元 (6월26일자)

○幹事選任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政務	林 鎭 出	한나라당
以防	李 訓 平	새천년민주당
財政經濟	安 澤 秀	한나라당
別以程何	姜雲太	새천년민주당
統一外交通商	曺 雄 奎	한나라당
机一个父姐的	文 喜 相	새천년민주당
國 防	朴世煥	한나라당
	金 한 길	새천년민주당
/ニエレ ウン//s	鄭文和	한나라당
行政自治 	元 裕 哲	새천년민주당
農林海洋水産	權五乙	한나라당
反 你做什小生	張 誠 源	새천년민주당

委員會	委員名	交渉團體
(見)(母)(司)(司)	朴是均	한나라당
保健福祉	金泰弘	새천년민주당
理控燃制	金文洙	한나라당
環境勞動	申溪輪	새천년민주당
建設交通	白承弘	한나라당
建 政父週	宋 勳 錫	새천년민주당
情報	鄭亨根	한나라당
At til	朴尚奎	새천년민주당

(6월20일자)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文化觀光	南 景 弼	한나라당
人工概儿	崔龍圭	새천년민주당
科學技術	朴 源 弘	한나라당
情報通信	金榮煥	새천년민주당

(6월21일자)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教 育	黃 祐 呂	한나라당
教 月	薛 勳	새천년민주당

(6월22일자)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豫算決算	李 漢 久	한나라당
特別	丁世均	새천년민주당
倫理特別	元 喜 龍	한나라당
無垤特別	朴宗雨	새천년민주당

(6월23일자)

○常任委員辭任吳補任

委員名	辭任多	委員會	補任多	委員會	交涉團體
朴在旭	敎	育	農林海	洋水産	한나라당
鄭昌和	農林海	洋水産	敎	育	한나라당

(6월19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漢東	保健福祉	産業資源	付上交渉團體
曺喜旭	産業資源	保健福祉	에도쪽하시아 니하는議員

(6월20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曺喜旭	保健福祉	産業資源	어 上交渉團體
李漢東	産業資源	保健福祉	에도속하지아 니하는議員

(6월21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國會運營	權琪述	金貞淑	한나라당
図 置 建 宮	朴炳錫	趙在煥	새천년민주당

(6월23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安大崙	政	務	保健	福祉	対上交渉團體
李漢東	保健福	福祉	政	務	에도둑하시아 니하는議員

(6월23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1	補任委員	會	交涉團體
李漢東	政 務		保健福	祉	対上交渉團體
安大崙	保健福祉		政	務	에도속하시아 니하는議員

(6월27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國會運營	李源性	許雲那	새천년민주당
(6월27	'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國會運營	許雲那	田溶鶴	새천년민주당
	田溶鶴	李源性	새천년민주당

(6월28일자)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鄭亨根	兪成根	한나라당
인사청문	李源性	金成鎬	새천년민주당
특 별	金學元	安大崙	어느交涉團體 에도속하지아 니하는議員

(6월27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41 V) 51 E	金成鎬	李源性	새천년민주당
인사청문 특 별	安大崙	元喆喜	어느交涉團體 에도속하지아 니하는議員

(6월28일자)

○議案提出

外國換去來法中改正法律案

(6월19일 정부제출)

6월20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警察法中改正法律案

(6월19일 정부제출)

6월20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屋外廣告物등管理法中改正法律案(李訓平의원 대표발

(6월21일 李訓平·金明燮 의원외 23인 발의)

6월22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6월21일 정부제출)

이상 2건 6월22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李相培 의원 대표발의)

(6월23일 李相培・李康斗・朱鎭旴・尹榮卓・

柳興洙・徐廷和・朴是均・李海鳳・林仁培・

金東旭・金鍾河・金一潤・朴在旭・朴承國・

權五乙・姜在涉・朴熺太・白承弘・安澤秀・

朴柱千・朴憲基・崔善榮・玄敬大・金晟祚・

李仁基・李在昌・申榮國・金淇春・鄭昌和・ 姜申星一議員 발의)

6월24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개정법률안(李相培의원 대표 발의)

(6월23일 李相培・李康斗・朱鎭旴・尹榮卓・

柳興洙・徐廷和・朴是均・李海鳳・林仁培・

金東旭・金鍾河・金一潤・朴在旭・朴承國・

權五乙・姜在渉・朴熺太・白承弘・安澤秀・

朴柱千・朴憲基・崔善榮・玄敬大・金晟祚・

李仁基・李在昌・申榮國・金淇春・鄭昌和・

姜申星一議員 발의)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 률안

(6월23일 정부제출)

이상 2건 6월24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6월23일 정부제출)

이상 2건 6월24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대법관(李揆弘)임명동의안

대법관(李康國)임명동의안

대법관(孫智烈)임명동의안

대법관(朴在允)임명동의안

대법관(姜信旭)임명동의안

대법관(裵淇源)임명동의안

(이상 6건 6월26일 정부제출)

이상 6건 6월2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政府組織法중개정법률안(李相培 의원 대표발의)

(6월27일 李相培・權五乙・金淇春・金龍學・

朴在旭・朴熺太・孫泰仁・辛卿植・朱鎭旴・

許泰烈・金武星・尹漢道・李康斗・睦堯相・

鄭昌和・李揆澤・李相得・朴憲基・柳興洙・

金東旭・金泰鎬・李在五・鄭義和・河舜鳳・

鄭亨根・金光元・朴承國・朴是均・白承弘・ 林仁培 의원 발의)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하겠음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

(6월28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독도개발특별법안(尹漢道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尹漢道・權五乙・金淇春・金龍學・

朴在旭・朴熺太・孫泰仁・辛卿植・李相培・

朱鎭町・許泰烈・金武星・金容甲・金浩一・

朴明煥・柳興洙・李康斗・李富榮・李相得・

李完九・鄭昌和・鄭亨根・崔鉛煕・李方鎬 의 원외 110인 발의)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하겠음

勤勞基準法중개정법률안(金貞淑 의원 대표발의)

雇傭保險法중개정법률안(金貞淑 의원 대표발의)

男女雇傭平等法중개정법률안(金貞淑 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 6월29일 金貞淑·姜昌成·金樂冀·

金容鈞・金燦于・孟亨奎・朴世煥・朴承國・

朴柱千・朴昌達・朴熺太・孫泰仁・孫鶴圭・

孫希姃・申榮均・吳世勳・尹汝雋・李嬿淑・

李元昌・李源炯・李允盛・李在五・全在姫・

鄭文和・鄭寅鳳・曺雄奎・曺正茂・朱鎭旴・

洪思德 의원외 104인 발의)

이상 3건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하겠음

國民健康保險法중개정법률안(金貞淑 의원 대표발의)

(6월29일 金貞淑・姜昌成・金樂冀・金容鈞・

金燦于・孟亨奎・朴世煥・朴承國・朴柱千・

朴昌達・朴熺太・孫泰仁・孫鶴圭・孫希姃・

申榮均・吳世勳・尹汝雋・李嬿淑・李元昌・

李源炯・李允盛・李在五・全在姫・鄭文和・

鄭寅鳳・曺雄奎・曺正茂・朱鎭旴・洪思徳 의 원외 104인 발의)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하겠음

휴회의건

(6월29일 의장제의)

6월30일 7월 3일 ⁽⁴일간)

○請願提出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6월26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이용부외 10인으로부터 權五乙 의원외 2인의 소개로 제출)

6월27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약사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6월27일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재정으로부터 朴是均 의 원외 1인의 소개로 제출)

6월27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要求書提出

4 · 13부정선거및편파수사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 구서

(6월28일 鄭昌和 의원외 132인 제출)

○報告書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의건심사경과보고서

(6월29일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인사 청문특별위원장 제출)

○書面質問書提出

영등포구치소이전에관한질문서

(6월20일 金文洙 의원 제출)

6월21일 정부에 이송

매향리사격장에관한질문서

(6월23일 金元雄 의원 제출)

6월23일 정부에 이송

서울구로벤처센터에관한질문서

(6월24일 金文洙 의원 제출)

국방부내비리실태현황과처리결과에관한질문서

(6월24일 金杞培 의원 제출)

이상 2건 6월24일 정부에 이송

매향리사격장에관한질문서

(6월26일 金元雄 의원 제출)

6월27일 정부에 이송

의료계집단폐업과관련한조치에관한질문서

(6월27일 趙舜衡 의원 제출)

긴급체포및현행범수감에관한질문서

(6월28일 秋美愛 의원 제출)

이상 2건 6월28일 정부에 이송

○書面答辯書提出

한미행정협정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달라이라마방한문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6월21일 정부제출)

박병일변호사사건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6월22일 정부제출)

자동차운전교육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6월26일 정부제출)

박병일변호사사건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영등포교도소 구치소이전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6월27일 정부제출)

(이상 6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